

충청북도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충청북도도로점용료징수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충청북도도로점용료징수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용료의 부과대상)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도로의 구역안에서 도로법시행령 제24조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작물, 물건, 기타의 시설을 신설 · 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제3조(점용료 산정기준) ①점용료는 별표 1에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②점용료의 산정에 있어서 토지가격은 인접한 토지의 공시지가(지가공시및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를 말한다)로 한다. 다만 인접토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필지가격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한다.

③점용료를 년액으로 산정한 경우 점용료의 산정기간이 1년미만인 때에는 월액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1월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④점용료의 산정에 있어서 점용면적, 점용률의 길이, 표시면적등이 1제곱미터미만 또는 1미터미만은 이를 산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광고탑, 광고판, 간판등의 표시면적은 표시부분의 면적으로 한다.

⑤단위당 점용료는 1원단위까지 산정하되, 기간단위가 1년인경우에 단위당 금액은 50원 단위로, 기간단위가 1일인 경우의 단위금액은 10원 단위로 끊어서 산정한다.

⑥별표 1의 제6호의 경우, 지하점용률의 상단의 깊이가 지하 20미터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2분의 1을, 지하 40미터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5분의 4를 각각 감액한다.

⑦별표 1중 정액으로 부과하는 점용료는 지가변동율이 10퍼센트이상 변동된 경우에 한하여 3년마다 이를 재조정 할수 있다.

제4조(점용료의 조정) 2년이상 계속하여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점용료보다 10퍼센트이상 증가할 때에는 당해년도의 점용료는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2의 점용료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제5조(소액부징수)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금액이 500원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6조(점용료의 감면) ①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

②재해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업의 경우에는 재해 기타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의하여 점용료를 감면한다.

③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 전기공급시설·전기통신시설·송유관·가스공급시설·열수송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2분의 1의 금액을 감액한다.

제7조(점용료의 반환) 도로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중 그 취소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된 기간분의 점용료는 반환한다.

제8조(점용료의 징수시기) ①점용료의 부과·징수시기는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

1. 점용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징수 한다.

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하는 당해년도분은 허가를 하는 때에,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년도 개시후 3월 이내에 부과·징수한다.

②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 각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점용료를 분납케 하거나 납부 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제9조(접 용료의 징수) ① 접 용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10조(부당이득금의 징수) 도로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 상당액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징수방법은 도로점용료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11조(부과·징수 위임) ① 점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업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 부과·징수에 관한 업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그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시 또는 군에 교부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